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30.

발 의 자 : 김남근 · 곽상언 · 박지원
박선원 · 민형배 · 박 정
남인순 · 이병진 · 김문수
민병덕 · 송재봉 · 이용우
김현정 · 안도걸 · 박정현
이강일 · 염태영 · 복기왕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, 위기 청소년,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.

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,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일정수준의 지원과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,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이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, 고용안정성, 급여 수준, 복지 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.

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종사자 복지 차원을 넘어,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임.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이들의 역량이 더욱 발휘되고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, 청소년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수 수준, 지급실태 및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·공표하도록 하는 것임.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시·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둬으로써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(안 제23조제3항 삭제,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).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3(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
- ⑤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 또는

학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24조의4(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) 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각각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처우개선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시·도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여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시·도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”를 “시·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) ①·② (생략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23조(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제24조의3(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

⑤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 또는 학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24조의4(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) 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

<신 설>

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각각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처우개선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시·도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여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

제25조(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) ①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읍·면·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.</u> ② ~ ⑤ (생략)	<u>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④ <u>시·도에 두는 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</u> 제25조(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) ① <u>시·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